

「윤극영가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06
------	------

2021년 9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 다. 상정결과 :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9월 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 주용태)

가. 제안이유

- 『윤극영가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요작곡가로 최초의 동요곡집인 “반달”을 출판한 윤극영의 가옥을 미래세대까지 보존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명소로서 활용코자 2013년도에 조성한 시설로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 함께 그 뜻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해 나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시설명 : 윤극영가옥
- 소재지 : 강북구 인수봉로84길 5 (수유동 566-26호)
- 시설규모 : 단층주택, 연면적 99.8㎡, 대지면적 : 205㎡
- 개관일자 : 2014. 10. 27.
- 위탁기간 : 2022.01.01 ~ 2024.12.31(3년)
- 민간위탁금(안) : 79백만원('22년 기준)
- 위탁사무
 - 윤극영가옥 운영 및 관리,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전시물보호, 수목 등 시설물 안전관리
 - 시민 홍보 및 교육 등 윤극영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윤극영가옥은 근현대 예술인의 가옥을 역사·교육·문화 자원으로 활용,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내 문화예술 허브로서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시 소유 서울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 예산조치 : '22년 예산 편성 필요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윤극영가옥'의 민간위탁 사무가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16.1월) 6년이 경과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 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윤극영가옥’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은 79백만원 규모임.

< 윤극영가옥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 윤극영가옥 ▶ 위치 : 강북구 인수봉로84길 5(수유동 566-26호) ▶ 개관일 : 2014. 10. 27. ▶ 규모 : 단층주택 연와조(대지 205㎡, 연면적 99.8㎡) ▶ 운영시간 : 화~토(10:00~18:00), 일(10:00~17:00) ※ 연중 개방,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주요시설 : 전시1·2·3실, 다목적실, 수장고, 사무실, 정원 ▶ 위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극영가옥의 전시물 보호, 수목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 - 시민홍보 및 강연, 경연대회 등 윤극영 관련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기타 윤극영가옥 운영과 관련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 조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인력 1명(화~토요일/주35시간) - 단기인력 1명(일요일) 		
		
윤극영가옥 외관(미니정원)	전시실1 - 생전 작업실	전시실2 - 서화 전시관
		
전시실3 - 유품 전시관	유품 전시 진열장	프로그램실(다목적실)

- 2014.10.27. 개관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맡고 있는 현 수탁자 (사) 한국반달문화원은 2018년에는 브런치콘서트, 무료 체험 놀이 연극 등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19 이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일(173일)이 많아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으로 비대면 수업 및 보충수업을 통해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대학생, 봉사단체를 통해 가옥을 가꾸는 등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음.

- 2021년 윤극영가옥의 민간위탁금은 7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 증액되었으나 유사한 규모로 매년 지원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윤극영가옥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21	2020	2019
민간위탁금	78,057	77,393	76,352
사업비	35,115	35,103	36,259
운영비	13,567	13,424	12,531
인건비	27,814	27,349	26,305
위탁대행수수료	1,561	1,517	1,497

- 최근 3년, 윤극영가옥을 방문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관람객보다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2배인 것으로 보아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최근 3년간 윤극영가옥 프로그램참여자 및 관람객 현황 >

2021.8.14.기준(단위 : 명)

구분	프로그램 참여자	관람객
2021	1346	953
2020	1829	1359
2019	3415	1415

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윤극영가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문화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이며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9. (생략)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윤극영가옥’의 민간위탁 계획은 2021년 6월에 수립되었고, 7월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을 통보 받은 바 있음.

<2021년 제4차 민간위탁 운용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윤극영가옥	시설/공모	3년	적정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공모의 경우,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윤극영가옥 민간위탁 추진 경과 >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1. 6월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상정	'21. 7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제302회 임시회)	'21. 9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21. 10월
○ 계약심사 및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21.11월
○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 (제303회 정례회)	'21. 12월
○ 수탁기관 운영 개시	'22. 1월

라. 그 외 검토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1)에 따르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는 연간 사업비 5억원이상인 사무가 대상이나 ‘윤극영가옥’은 연간 사업비가 79백만원으로 종합성과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2)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부터 지도·점검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조례 및 협약서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며, 시설관리 등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매년 이용자 만족도 분석 결과가 미흡하며, 여전히 홈페이지상에서 예·결산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관람객이나 강좌가 없는 시간대 활성화 방안과 대부분의 강좌가 5060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및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
- 1)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016년 ~ 2020년 윤극영가옥 지도·점검결과 >

연도별	지적사항
2020년	· 근로일지 미작성 ·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모의 훈련 실시 필요 · 이용자 만족도 분석 결과
2019년	· 화재 감지기 미설치 · 홍보활성화 · 이용자 만족도 분석 결과
2018년	· 이용자 만족도 분석 결과 · 성과 미달 사업의 경우 보완계획에 따라 마무리 할 것
2017년	· 수익금은 사전승인을 득하고 사업계획서 내 포함 · 안전 매뉴얼 마련 · 건의함 비치로 민원 적극 응대
2016년	· 수익금 분기별 작성·기록 · 수익금, 후원금, 예산, 결산 수탁업체 홈페이지에 등재 및 정보공개
2015년	없음

< 윤극영가옥 프로그램 현황 및 보완과제 >



○ 보완과제

- 가옥 내 전시 관람객이나 강좌가 없는 시간대 가옥 이용 활성화방안 마련 필요
- 강좌가 대부분 5060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및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강화 필요

-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위원회에서는 현재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운영형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문화본부 내 유사한 형태의 문화시설 현황 >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	운영형태
1	윤극영가옥	문화정책과 미래유산팀	민간위탁
2	이상범가옥	역사문화재과 문화재관리팀	직영
3	최규하가옥	역사문화재과 문화재관리팀	직영
4	운현궁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민간위탁
5	딜쿠샤(앨버트 테일러 가옥)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6	백인제가옥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7	경희궁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유사한 형태의 가옥과 궁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혹은 직영으로 이원화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운영형태의 차이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마.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 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윤극영가옥은 미래유산 1호로 방치하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미래유산을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서울의 문화예술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으나 강북구민 조차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운영자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연령이 높아 아동·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이들의 접근성과 인지도 상승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윤극영가옥」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706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윤극영가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요작곡가로 최초의 동요곡집인 “반달”을 출판한 윤극영의 가옥을 미래세대까지 보존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명소로서 활용코자 2013년도에 조성한 시설로서,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 함께 그 뜻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해 나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윤극영가옥
- 소재지 : 강북구 인수봉로84길 5 (수유동 566-26호)
- 시설규모 : 단층주택, 연면적 99.8㎡, 대지면적 : 205㎡
- 개관일자 : 2014. 10. 27.

다. 위탁기간 : 2022.01.01 ~ 2024.12.31(3년)

라. 민간위탁금(안) : 79백만원('22년 기준)

마. 위탁사무

- 윤극영가옥 운영 및 관리,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전시물보호, 수목 등 시설물 안전관리
- 시민 홍보 및 교육 등 윤극영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윤극영가옥은 근현대 예술인의 가옥을 역사·교육·문화 자원으로 활용,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지역 공동체 내 문화예술 허브로서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관련분야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시 소유 서울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나. 예산조치 : '22년 예산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미래유산팀 신규은 (☎ 2133 - 2546)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 ① 시장은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